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689
----------	------

2017년 4월 24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3월 14일, 남창진 의원 (찬성자 13명)
- 나. 회부일자 : 2017년 3월 20일
- 다. 상정일자 : 제273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17년 4월 24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남창진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여부의 지도·안내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빈번한 주택 내 화재 사고 발생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어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상위 법률명 변경 사항을 반영함(안 제1조 / 제4조제1항)
-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지도·안내 의무 명확화(안 제4조제1항)
- 3)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실적 관리를 위해 시장이 자치구와 협력할 수 있도록 의무사항을 마련(안 제4조제2항)
- 4) 소화기의 비치 거리기준 추가(안 제5조제1호)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주택화재 예방 및 피해 감소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과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별 의견

가. 인용법명 변경 관련(안 제1조, 안 제4조제1항)

- 안 제1조 및 제4조제1항은, 본 조례의 상위법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 20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인용법명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안 제4조)

- 현행 제4조제1항은, ‘법 제8조제1항1)에서 정한 주택에 대한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²⁾의 설치 여부를 지도·안내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 개정안은 이를 ‘...(생략)...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법정 주택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현행 조례의 ‘설치여부’라는 표현은 마치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는 바, 의무사항임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하겠음.

[표 1] 개정안 수정조문대비표(안 제4조)

현 행	개정안
<p>제4조(주택의 신축·개축 등의 소방시설 설치 확인) 시장 및 구청장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u>소방시설의 설치여부를 지도·안내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도·안내 등) ① 시장 및 구청장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하는 경우에-----<u>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② 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 관리 등을 위하여 자치구와 협력하여야 한다.</p>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2)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다만, 소방시설 설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지도·안내’ 표현의 경우 역시, 개정안과 같이 삭제하기 보다는 소방의 행정력이 미치는 한 최종 확인까지 이루어지도록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지는 바,
- 현행 제4조의 조제목을 현행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도·안내 등’을 ‘.... 지도·확인 등’으로 수정하고, 이에 맞추어 개정안의 조문 중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 지도·확인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다음으로, 안 제4조제2항의 경우 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 등을 위해 자치구와 협력하도록 의무사항을 신설(표 1)참조)하고 있으나,
-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에 관한 기초자료는 허가기관인 자치구가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력의무 담당 대상을 ‘시장’이 아닌 ‘구청장’으로 해야 바람직한 조문 구성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구청장은 시장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 등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관련(안 제5조제1호)

- 안 제5조제1호는, 주택 내부에서 소화기 설치의 거리한계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주택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그림 1) 참조)를 20m이내로 규정하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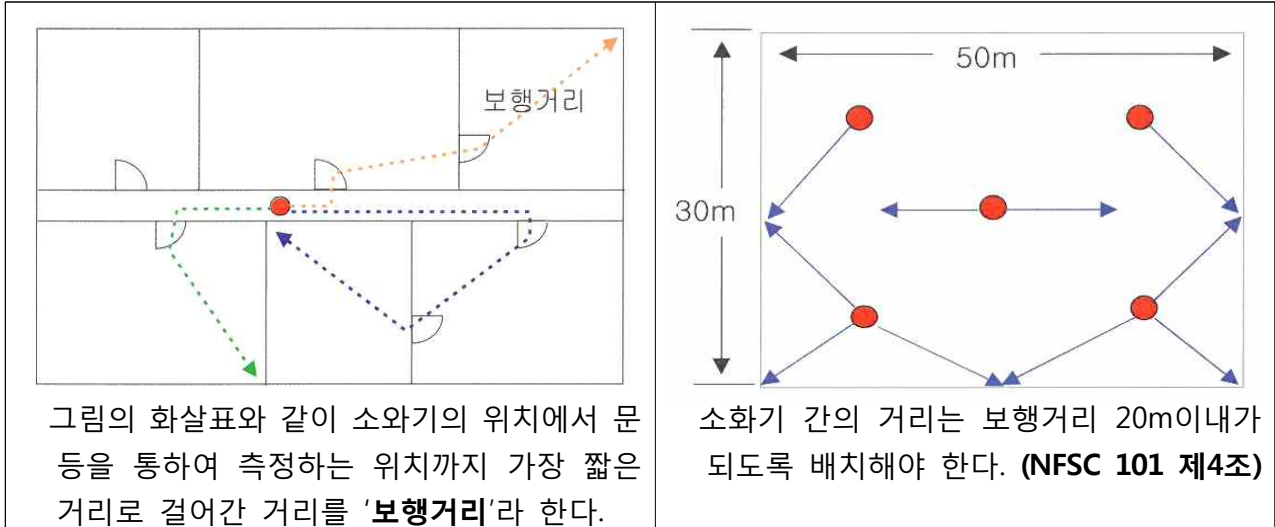
- 이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21호)」 제4조제1항제4호³⁾의 특정소방대상물⁴⁾ 소형소화기 설치에 대한 보행거리 기준(20m이내)을 준용하고 있으며,
- 주택 면적이 클 경우, 발화점에서 소화기가 위치한 곳까지의 보행거리가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주택의 각 부분에서 소화기까지의 거리를 보행거리 기준 20m 이내로 한정하면, 화재 초기진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됨.

[표 2] 개정안 수정조문대비표(안 제5조제1호)

현 행	개정안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소화기구는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한다.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 ----- -. 1.----- ----- 설치하되, 주택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3)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4조(설치기준) ① 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 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5층 이상의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복합건축물 등을 말한다.



[그림 1] 소화기 배치 사례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른 그림해석)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의) 신축, 개축 등은 허가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나, 기존 시설물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 (김희걸 의원)

답변) 기존 주택물에 대한 설치확인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적인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좀 더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음.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안 제4조제1항 중 소방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도·확인까지 하도록 강화하는 한편, 안 제4조제2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실적관리를 위해 시장에게 부과한 구청장과의 협의의무를 시장이 협력을 요청할 경우 구청장이 이에 응하도록 구청장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함.

8.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689
----------	------------

제안일자 : 2017년 4월 24일

제안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개정안은 상위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주택화재 예방 및 피해 감소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과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소방시설 설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소방의 행정력이 미치는 한 최종 확인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에 관한 기초자료를 허가기관인 자치구가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력의무 부과 대상을 시장이 아닌 구청장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담보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의무 뿐만 아니라 지도·확인까지 이루어지도록 함. (안 제4조제1항)
-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를 위해 시장이 구청장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함. (안 제4조제2항)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조제목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도·안내 등”을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도·확인 등”으로, 조문 중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시장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 등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제4조(주택의 신축·개축 등의 소방시설 설치 확인) 시장 및 구청장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여부를 지도·안내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도·안내 등)</p> <p>① 시장 및 구청장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하는 경우에 -----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 관리 등을 위하여 자치구와 협력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도·확인 등)</p> <p>① ----- ----- ----- ----- ----- -----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시장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 등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p>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도·확인 등) ① 시장 및 구청장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하는 경우에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장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 등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제5조제1호 중 “설치한다.”를 “설치하되, 주택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u>」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u>」 ----- ----- -----.</p>
<p>제4조(주택의 신축·개축 등의 소방시설 설치 확인) 시장 및 구청장이 「<u>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u>」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여부를 지도·안내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도·확인 등) ① 시장 및 구청장이 「<u>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u>」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하는 경우에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시장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 등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p>
<p>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p> <p>1. 소화기구는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u>설치한다</u>.</p> <p>2. (생략)</p>	<p>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 -----.</p> <p>1. ----- ----- <u>설치하되, 주택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u>.</p> <p>2. (현행과 같음)</p>